



제433 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유주방 운영업 책임보험 제도 보완〉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78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공유주방 운영업 책임보험 제도 보완	3

I. 개요

1.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87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1. 6.

(3) 회 부 일 : 2026. 1. 7.

나. 제안이유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한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여 동법 제7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에 보험회사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계약체결 거부 제한 등 보호조치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동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체결 거부 제한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압류 금지 규정 신설을 통해 보험 가입 대상인 공유주방 운영

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고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 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계약체결 거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의무 이행을 유도함(안 제101조제1항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공유주방 운영업 책임보험 제도 보완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가 식품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가 보험 계약의 체결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보험금지급 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안 제44조의2제2항·제3항 신설),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1조제1항제1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2(보험 가입) ① (생략) <u><신 설></u>	제44조의2(보험 가입)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는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계

<u><신 설></u> ② (생 략)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1. (생 략) 2. ~ 4. (생 략) ② ~ ⑤ (생 략)	<u>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u> <u>다만,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가 보험 계약의 체결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u>③ 이 법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u> <u>④ (현행 제2항과 같음)</u> 제101조(과태료) ① ----- ----- ----- --- 1.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u>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u> <u>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u>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책임보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2020년 12월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하여 “공유주방 운영업”이 도입되면서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었음¹⁾.
- 동 제도를 통하여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서 식품등의 위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개별 영업자의 배상 능력과 무관하게 사망·부상·후유장애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공유주방 운영업 책임보험 제도 개요²⁾ >

□ 주요 내용

○ (가입대상)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

* 공유주방 :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

1) 「식품위생법」

제44조의2(보험 가입)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종류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0조(책임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서 식품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2.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영업소의소재지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3.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경우
4. 책임보험이 만료된 경우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 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하나의 사건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다. 나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2)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

○ (가입시기) 공유주방 운영업을 시작하기 전

○ (보험금액) 최소 보험금액은 사망(1억5천), 부상(3천), 후유장해(1억5천)

* 「재난안전법」의 보상한도 및 타 법령 기준과 동일 수준

○ (과태료) 300만원 이하(미가입 기간 1개월 미만 35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70만원, 3개월 이상 100만원)

□ 가입 현황

○ 2025년 12월 말 기준 총 79개 업체가 공유주방 운영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8개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책임보험 상품에 모두 가입 중임.

* 2025년 10월말 기준, 제도 시행 이후 피해 보상 건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개정안은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가입 신청 시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되, 사고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양도·압류 및 담보 제공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안전의무보험”을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공제로 정의하고 있음³⁾.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 공유주방 운영업 책임보험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으로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기준이 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⁴⁾.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총 64종의 보험이 재난안전의무보험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중 식약처 소관은 2종으로 현행법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책임보험”과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책임보험”이 해당됨⁵⁾.

□ 해당 기준은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개정안은 관련 내용을 추가하려는 취지로 보임.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를 정할 것
2.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3.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에 해당함에도 가입을 게을리 한 자 또는 가입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보험회사, 공제회 등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할 것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가입의무자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7. 그 밖에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5) [참고 1] 재난안전의무보험 현황(p.12)

□ 이와 관련하여, 2024년 8월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공유주방 운영업 책임보험과 의료기기 책임보험·공제에 대하여 보험사 계약체결 거부 제한 규정 및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규정 마련을 권고한 바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유사입법례의 경우에도 개정안과 유사하게 계약체결 거부 제한 및 보험금 지급 청구권의 압류·양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⁶⁾,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보험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동일한 취지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⁷⁾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2024년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 평가결과(일부 발췌) >

□ [권고 내용] 법령상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규정

불충족 항목	권고 보험수	권 고 사 항
◆ 보험사 계약체결 거부 제한	39건 (연구실 안전공제 등)	·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
◆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등	46건 (운전학원 종합보험 등)	· 사고피해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 마련

❖ 아래 표 내용 중 제도개선 권고항목은 보험별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번호*로 표시한 것임

* ① 보상한도, ② 보험 가입·갱신 확인 및 점검 체계, ③ 미가입자 제재 체계, ④ 보험사 계약체결 거부 제한, ⑤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 '23년 불수용 보험 항목, '22년~'23년 권고 수용보험 중 미완료 항목, '24년 신규 보험 중 미흡 항목을 표기함

6) [참고 2] 재난안전의무보험을 규정하는 유사입법례(p.14)

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963호)

○ 세부 종합 평가결과

연 번	기관	부서	보 험 명	등 급	제도개선 권고항목
20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공유주방 사고배상 책임보험	다	④⑤
30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공제)	가	④⑤

자료 : 행정안전부

□ 다만, 개정안은 공유주방 운영업 책임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300만원)보다 중한 수준인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모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⁸⁾하고 있어, 보험 미가입자와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수준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음.

□ 다중이용업에는 공유주방 운영업 중 일부(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가 포함⁹⁾되어 있어, 해당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공유주방 운영업 책임보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6의3. 제13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6의4.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营业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이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공유주방 운영업 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재 수준의 형평성 측면에서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책임보험 미가입자인 공유주방 운영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300만원 이하)보다 높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보험회사의 계약 체결 거부 행위에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보험 가입에 대한 제도보완을 통해 피해 소비자의 피해보상이 보다 강화되는 규정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营业을 말한다. 다만, 营业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营业은 제외한다.

1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营业으로서 营业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营业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营业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营业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营业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营业은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문 의 처

02)6788-5493

【참고 1】	재난안전의무보험 현황 (20개 기관, 64종 보험 ¹⁰⁾)
--------	--

연번	기관	보험명(가칭)	관련 법령
1	산업부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석유류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 사업법
2	문체부	야영장업 배상책임보험	관광진흥법
3	문체부	유원시설 배상책임보험	
4	해수부	해양특수경비원 무기사용손해보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보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6	국토부	궤도운송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궤도운송법
7	해수부	낚시터 배상책임보험	낚시관리법
8	해수부	낚시어선 배상책임보험	
9	소방청	다중이용시설 화재 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 업소법
10	경찰청	운전학원 종합보험	도로교통법
11	국토부	도심항공 교통규제 샌드박스보험	도심항공교통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	농림부	맹견배상 책임보험	동물보호법
13	해수부	마리나업자 배상책임보험	마리나항만법
14	농림부	승마시설피해 손해보험	말산업 육성법
15	국토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보험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16	복지부	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	모자보건법
17	산업부	분산에너지사업자 배상책임보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18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공제	사회복지사업법
19	산업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사업자 손해배상책임보험	산업융합 촉진법
20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	문체부	생활체육 안전보험	생활체육진흥법
22	해수부	선원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	선박투자회사법 / 선원법 / 항로표지법
23	해경청	수상레저 종합보험	수상레저안전법
24	해경청	수상구조사등 피해보상보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등에 관한 법률
25	환경부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보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6	행안부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승강기 안전관리법
27	국토부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책임보험	스마트도시법
28	문체부	지정스포츠클럽 피해보상 책임보험	스포츠클럽법
29	복지부	기부식품등 취식사용 피해손해보험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30	식약처	공유주방사고 배상책임보험	식품위생법
31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설비 배상책임보험	신재생 에너지법
32	환경부	수렵 배상책임보험	야생생물법
33	행안부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법
34	해수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35	과기부	연구개발규제 샌드박스보험	연구개발특구법
36	과기부	연구실 안전공제	연구실 안전법
37	해경청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배상책임보험	연안사고 예방법
38	행안부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옥외광고물법
39	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상해보험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40	우주청	우주손해 배상책임보험	우주손해배상법
41	원안위	원자력 손해배상책임보험	원자력손해배상법
42	해수부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보험	유류오염배상법

10) 자료: 행정안전부

연번	기관	보험명(가칭)	관련 법령
43	행안부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44	식약처	의료기기 책임보험	의료기기법
45	복지부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46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율주행자동차법
47	과기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배상책임보험	정보통신망법
48	과기부	정보통신융합 규제샌드박스보험	정보통신융합법
49	행안부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안전법
50	국토부	기계식주차장보수업 배상책임보험	주차장법
51	산업부	실외이동로봇 배상책임보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52	여가부	청소년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청소년복지지원법
53	여가부	청소년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청소년활동진흥법
54	여가부	청소년활동시설 배상책임보험	
55	문체부	체육시설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법
56	문체부	운동경기대회 배상책임보험	체육인 복지법
57	교육부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학교안전법
58	교육부	학원배상 책임보험	학원법
59	국토부	항공보험(대형 등)	항공사업법
60	국토부	항공보험(경량)	
61	국토부	항공보험(초경량)	
62	해수부	선주배상 책임보험	해운법 / 선박투자회사법 / 항로표지법
63	금융위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화재보험법
64	환경부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 피해구제법

【참고 2】 재난안전의무보험을 규정하는 유사 입법례

○ 재난취약시설보험(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⑤ 보험사업자는 재난취약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이하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제2항 전단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재난취약시설을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4조(계약의 체결 의무) ①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제40조(압류 등의 금지) ①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4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 환경책임보험(환경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보험자) ③ 보험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조업중지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제21조(피해배상청구권의 우선변제 등) ② 이 법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자**

○ 화재배상책임보험(소방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①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4.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